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
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○○○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)
연 월 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(법률 제17358호, 2020. 6. 9, 일부개정) 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 인증의 운영을 위한 인증·재인증·변경인증 관련 신청서 등의 서식,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휴·폐업 신고 등을 위한 서식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

- 1)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 인증·재인증·변경인증의 신청서와 인증서 등의 서식(안 제11조, 안 제12조, 별지 서식 제3호부터 제5호까지)
- 2)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서 및 휴·폐업, 지위승계 신청서 등의 서식(안 제13조, 안 14조, 별지 서식 제6호부터 제9호까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의 절차 등) ① 영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서 “그 밖에 인증시험에 필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
2.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
③ 영 제60조의3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.

제12조(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변경인증·재인증의 신청 등) 영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

항의 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다.

제13조(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) ① 영 제60조의6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60조의6제4항에 따라 다른 인증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정보통신망연결 기기등에 대한 인증시험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.

제14조(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등) ① 영 제60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.

② 영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이 휴업·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영 제60조의7제3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 등을 통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60조의6제1항의 최초 지정에 준하여 심사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의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신설규정은 영 제60조의3부터 제60

조의8이 적용되는 때부터 시행한다.

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	
신청인	업체명	사업자등록번호		
	대표자	전화번호		
	주소			
	전자우편(e-mail)			
제품정보	신청등급	구분	분야	
	제품유형			
	제 품 명			
	모 델 명			
	제 조 사			
	운영체제			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6, 시행령 제60조의3,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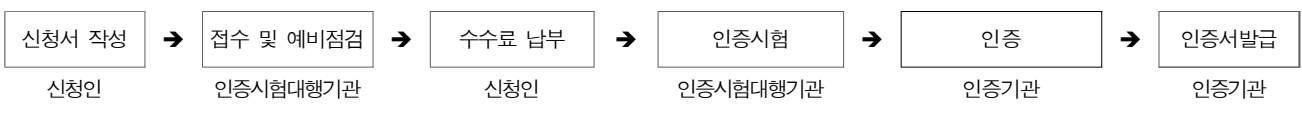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oo(인증시험대행기관명)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정보보호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증명하는 서류 1부 2.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사용자 설명서 1부 3.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 1부 4.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
------	--

처 리 절 차



210mm×297mm[(백상지(80g/㎡)또는 중질지(80g/㎡)]

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

업 체 명:

제 품 명(모델명):

인증번호:

인증 등급:

유효기간:

제 조 사:

제품버전:

시험기관:

위 **제품**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조의6, 시행령 제60조의3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인터넷진흥원장

직인

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변경·재인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	
신청인	업체명			사업자등록번호		
	대표자			전화번호		
	주소					
	전자우편(e-mail)					
제품정보	신청등급		구분		분야	
	제품유형					
	제 품 명					
	모 델 명					
	제 조 사					
	운영체제					
	인증번호					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0조의3,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·재인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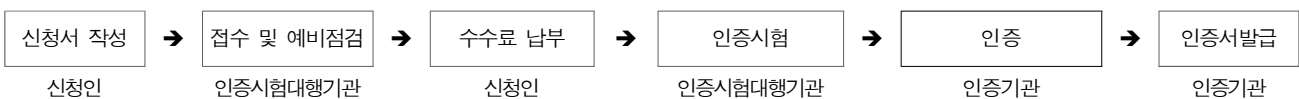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oo(인증시험대행기관명)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정보보호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증명하는 서류 1부 2.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사용자 설명서 1부 3.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 1부 4.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5.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 1부
------	--

처 리 절 차



210mm×297mm[(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제 호

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

1. 상 호 명(기관명):
2. 사업자등록번호:
3. 소 재 지:
4. 대 표 자:
5. 지정의 유효기간 :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직인

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인증시험 대행기관	업체명	
	대표자	사업자등록번호
	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번호	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일(유효기간)

구분	세부	실적
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 실적	최초인증	건
	재인증	건
	변경인증	건
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 내역 변동사항	[] 없음	[] 있음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0조의7 제1항,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인증시험대행기관의 휴·폐업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고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신고자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
상호(명칭)			
소재지			
휴업·폐업 일시		휴업기간(휴업의 경우) ~	
휴업·폐업 사유			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0조의7,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 휴업, [] 폐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자 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

참고 및 유의사항

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(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인증시험대행기관 양수·합병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	10일
양도인 (합병 전)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)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)		
	주소	(전화번호:)		
	사업의 종류	등록종별		
	사업장 규모			
	사업장 소재지			
양수인 (합병 전)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)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)		
	주소	(전화번호:)		
	사업의 종류	등록종별		
	사업장 규모			
	사업장 소재지			
양도·양수 후 (합병 후)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)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)		
	주소	(전화번호:)		
	사업의 종류	등록종별		
	사업장 규모			
	사업장 소재지			
양도·양수 (합병)원인	[] 매매 [] 상속 [] 증여 [] 기타			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0조의7,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장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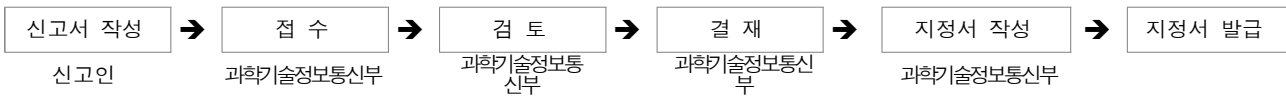
신고인 제출서류	1. 사업자등록증 2.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. 영 제60조의6 및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증명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

210mm×297mm[(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(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</u> <u>증의 절차 등) ① 영 제60조의3</u> <u>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</u> <u>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신청서는</u> <u>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.</u> <u>② 영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</u> <u>서 “그 밖에 인증시험에 필요한</u> <u>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</u> <u>드웨어 설계도</u> <u>2.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환경</u> <u>3. 사업자 등록증</u> <u>③ 영 제60조의3제6항에 따른</u> <u>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호</u> <u>보인증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</u> <u>따른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2조(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</u> <u>보보호인증의 변경인증·재인</u> <u>증의 신청 등) 영 제60조의4제1</u> <u>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거</u> <u>나 같은 조 제2항의 재인증을</u> <u>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의 서</u> <u>식에 따른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3조(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</u>

<신 설>

기준 등)

① 영 제60조의6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60조의6제4항에 따라 다른 인증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인증시험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.

제14조(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

관리 등) ① 영 제60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.

② 영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이 휴업·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영 제60조의7제3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 등을 통하여 인 증시험대행기관의 지위를 승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 서식 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60조의6제1항 의 최초 지정에 준하여 심사한 다.